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0
----------	-------

발의연월일 : 2019. 7. 30.

발의자 : 김현권 · 안호영 · 김병기
서영교 · 서삼석 · 윤준호
김철민 · 인재근 · 김영춘
오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또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으로 정의하고,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함(안 제2조).

나.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도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

자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3조).

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안 제15조).

사.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증여·위탁받을 수 있음(안 제19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 ·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 · 생활숲 ·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 ·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숲등의 총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해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태적 · 경관적 · 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평가하고 제6조의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 ·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의 조성 ·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경분야 관련 전문가 각 1명 이상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 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다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신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도시숲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숲등의 신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증여·위탁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범위·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조

제20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공사나 태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도시숲등 및 가로수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부담금의 징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담금”으로 본다.

④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원상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장애물을 설치·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한 자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24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및 가로수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 · 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관련 단체의 장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인증기관의 장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제2차 소속기관의 장에

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지 아니하고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加重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 · 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 · 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 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이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 · 생활림 · 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 · 생활숲 · 가로수”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 · 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 · 생활림 · 가로수”를 “도시숲 · 생활숲 · 가로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